



의안번호	제 2020 - 22호
의 결 연 월 일	2020. 9. 14. (제104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양형위원 개임	2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3
I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4
IV. 제7기 후반기 설정·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1. 개요	6
2. 양형자료조사 내용	6
3. 분석 내용	7
V.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8
2. 강도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8
VI.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22
2. 관련 규정	22
3. 공개 방법	22
4. 추진 일정	23
VI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24
2. 관련 규정	24

3. 의견수렴 계획	25
4. 시행 일정	28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리셋, 추적단 불꽃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서 제출	29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55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	55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	59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60
나. 민원 우편	67

<input type="checkbox"/> [별지1,2]	[각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input type="checkbox"/> [별지3]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input type="checkbox"/> [별지4]	[법원 및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전문위원 제135차 전체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화상회의로 개최함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시	안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35차	2020. 8. 31.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제출 의견 검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소위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군 명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소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II. 양형위원 개입,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양형위원 개입

가. 개요

- 2020. 8. 7.자로 김영대 위원 퇴직(해임간주), 2020. 8. 11.자로 노정환 위원 해촉(사임)
- 2020. 9. 14.자로 조상철 위원(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고경순 위원(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각 위촉

나. 양형위원 구성

지위	성명	직위	위촉일자 (임명일자)
위원장	김 영 란	前)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2019. 4. 27.
위원 (법관)	김 창 보	서울고등법원장	2019. 4. 27.
	강 승 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 4. 27.
	고 연 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2019. 4. 27.
	김 우 수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 4. 27.
위원 (검사)	조 상 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20. 9. 14.
	고 경 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2020. 9. 14.
위원 (변호사)	염 용 표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2019. 4. 27.
	정 영 식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2019. 4. 27.
위원 (교수)	원 혜 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2019. 4. 27.
	이 주 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 4. 27.
위원 (학식·경험)	심 석 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2019. 4. 27.
	최 은 순	변호사	2019. 4. 27.

2. 신입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0. 9. 14.(월) 14:00
- 장 소 : 대법원 본관 11층 대접견실
- 참석 범위 : 대법원장, 위원장, 상임위원, 비서실장
- 위촉대상자 : 조상철, 고경순 위원

※ 신입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1,2] 신입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III. 전문위원 개임,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2020. 9. 2.자로 김춘수 전문위원 해촉(사임)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2. 신규 위촉 대상자

- 최성국 대검찰청 양형정책관(2020. 9. 14.자)

3.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20. 9. 14.(월) 14:25
- 장 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위촉장 수여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위촉대상자 : 최성국 전문위원

※ 신임 전문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3]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기재와 같음

4. 전문위원 구성

구분	성명	기수	소속	직위	최초위촉일
법원	손철우	제25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8.02.27.
	최승원	제30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19.02.27.
	백광균	제37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20.03.02.
검찰	최성국	제30기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부장검사	20.09.14.
	유관모	제38기	대검찰청 연구관	검사	20.02.17.
변호사	범현	제3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08.20.
	김희연	제41기	김희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17.03.07.
	이형일	제14회 군법무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군법무관	20.03.23.
교수/ 전문가	강수진	제24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5.16.
	한상규	제24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5.16.
	김혜경	해당없음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5.05.16.
	최준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8.20.
	박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09.09.

IV. 제7기 후반기 설정 대상범죄 양형자료 조사 및 결과분석

1. 개요

- 위원회 제95차 회의(2019. 6. 10.)에서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가 선정됨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2019. 6.부터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에 착수
 - 전반기 대상범죄 : 디지털 성범죄, 균형법상 성범죄(설정), 선거, 교통범죄(수정)
 - 후반기 대상범죄 : 주거침입, 환경범죄(설정), 마약, 강도범죄(수정)
- 제103차 회의(2020. 7. 13.)에서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
- 제7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인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양형기준 설정·수정안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대상범죄에 대하여 범죄유형의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 제7기 후반기 설정·수정(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를 2020. 7. 9. ~ 2020. 7. 29.까지 실시 완료함

2. 양형자료조사 내용

가. 조사 대상범죄

- 제7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군(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전국의 주요 법원에서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선고된 사건
- 조사 대상 건수 : 1,420건(세부 죄명별로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¹⁾추출)

나. 조사기간

- 2020. 7. 9.(목) ~ 7. 29.(수)

다. 조사방법

1) 동일 죄명의 동일 법조에 해당하는 사건

- 분석관 18인이 2~3인씩 1팀을 이루어 전국 58개 지방검찰청(지청포함) 중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50개 지방검찰청(지청포함)에서 출장 조사
-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표 및 판결문을 미리 준비하여 출장 대상기관에서 형사사건기록을 대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양형정보시스템에 입력

라. 조사 완료

- 예정된 조사기간 동안 조사 대상 사건 1,420건 중 기록의 대출, 기록 없음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 108건을 제외한 1,312건의 양형자료조사를 완료함
- 다만, 양형자료조사가 완료된 1,312건 중 분석 과정에서 이중경합범 사건 등의 이유로 16건을 제외한 1,296건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함
- 법원 및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은 [별지4]참조

3. 분석 내용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순으로 통계분석 결과를 설명
 - 각 장에는 사건수, 선고내역 등을 포함한 전체 현황을 나타낸 다음, ① 전체 범죄군의 조사 인자에 대한 빈도표를 보였고, ② 분산분석 및 T-test의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 차이를 분석하고, ③ 카이제곱 검정 방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에 따른 실형·집행유예 여부를 분석하고, ④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양형인자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정도를 파악함

V.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강도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103차 회의(2020. 7. 13.)에서 의결한 강도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조회 기간

- 2020. 7. 17. ~ 2020. 8. 17.

다. 회신 기관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2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6개(국회 3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5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라. 회신자료

- 별첨 「강도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2. 강도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각급 법원

○ 설정 범위 및 유형의 정의 수정

- 법률 개정에 따른 설정 범위 및 유형 정의 수정으로 적절하다는 의견

○ 집행유예 기준 중 ‘집행유예’를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변경

-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반영하여 오인 여지를 차단한 것이므로 적절하다는 의견

나. 법무부

○ 의견 없음

다. 대한변호사협회

(1) 주요내용

상습·누범강도의 구성요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의 적용법조를 제5조의4 제5항에서 같은 항 제2호로 수정하는 내용임.

또한 집행유예 기준에서 참작사유를, 집행유예 이상 전과에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로 수정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찬성

(가) 결론의 요약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찬성합니다.

(나) 구체적 검토

1) 상습·누범강도

현행 강도범죄 양형기준은 2011. 4. 15. 수정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인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을 개정하면서, 제5조의4 제3항²⁾을 삭제하여, 상습강도를 특정범죄가중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강도와 상습장물죄를 규정하고 있던 제5조의4 제5항 본문을, 절도, 강도와 상습장물이라

2)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는 유형에 따라 각 호로 세분화하고, 강도는 제5조의4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집행유예 기준

현행 강도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8. 1. 6.부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은 집행유예 기준에서 말하는 참작사유로서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임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회신 의견

가. 대법원

- 설정 범위 및 유형의 정의 수정
 - 법률 개정에 따른 설정 범위 및 유형 정의 수정으로 적절하다는 의견
- 권고 형량범위 수정(대유형 4 대량범)
 - 법정형 변동(법정형에서 유기징역 하한이 3년 또는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에 따른 형량범위 수정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기본, 가중 영역의 하한 상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
- 집행유예 기준 중 ‘집행유예’를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변경
 -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반영하여 오인 여지를 차단한 것이므로 적절하다는 의견

나. 법무부

- 최근 잇달아 불거진 마약 사건(‘버닝썬 사건’, ‘연예인·재벌3세 마약류 투

약 사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클럽 등을 중심으로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 확인

- 국내 마약류사범은 2011~2014년간 1만명 이하로 억제되었으나, 2015년 11,916명, 2016년 14,214명, 2017년 14,123명, 2018년 12,613명, 2019년 16,044명으로 증가 추세임
- 전세계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마약 범죄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
 - 세계적으로 마약 남용자는 2009년 2.1억명에서 2017년 2.7억명으로 증가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메트암페타민이 주로 남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밀매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합성 대마 등 신종 향정물질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국내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2012년 359명에서 2019년 1,529명으로 증가), 우리나라를 경유한 마약류 밀수사건 또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낮아 마약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높지 않고, 특히 법정형과 비교할 때 법정형 대비 형량이 매우 낮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법정형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입법자의 입법 의도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안보다 상향조정이 필요함
- 특히 마약류 공급사범인 2유형(매매·알선 등), 3유형(수출입·제조 등)에 대한 형량범위 상향을 통해 마약류 확산 억제가 필요함

다. 대한변호사협회

(1) 수정이유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5. 4. 13. 수정을 거쳐 2015. 5. 15.부터 수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 3. 13. 개정(2018. 9. 14. 시행)되어 종전 임시마약류(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를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그 위해성에 따라 처벌 조항을 정비하였음.

대량범의 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가 2016. 1. 6. 개정·시행되어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낮아짐.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및 유형의 정의 수정으로, 대량범의 경우 법정형이 변동되어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생김.

또한 집행유예 기준에서 참작사유를, 집행유예 이상 전과에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로 수정하는 내용임.

(2) 검토의견 : 찬성·일부보완 의견

(가) 결론의 요약

대유형 1. 투약·단순소지 등, 2. 매매·알선 등, 3. 수출입·제조 등과 집행유예기준은,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 법률 개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찬성합니다.

다만, 대유형 4. 대량범의 경우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적용법조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제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출입 등이 아닌 매매로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범죄로 일정액 이상의 마약을 매매한 경우)를 대량범에서 제외하게 되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완의견입니다.

(나) 구체적 검토

1)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 - 찬성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5. 5. 15. 수정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인 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기존의 임시마약류를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도록 하고, 처벌규정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하 ‘수정안’)은 이러한 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대량범 -보완

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관련 유형

① 수정내용

수정안은 대유형 4. 대량범의 제2유형의 2번째 항목(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적용법조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대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³⁾로 수정하였고, 제3유형의 2번째 항목(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의 적용법조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대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³⁾로 수정하였습니다.

② 수정이유

그리고 이러한 수정이유로, 기존 양형기준의 [유형의 정의] 중 적용법조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이후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법률 개정 전에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헌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을 명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12쪽).

③ 수정에 따른 변화

그런데 적용법조에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이하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와 달리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³⁾은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범의 적용법조에서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을 제외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제1호, 제2호)만을 명시한다면, 매매 등을 한 마약류가액이 500만 원 이상, 혹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량범으로 보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3)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 경위와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마약범죄 양형기준 제·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수출입, 제조 등의 경우 외에 매매,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 소지·소유(이하 ‘매매 등’)를 한 경우로서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량범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거 양형위원회의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법체계의 불균형

더 나아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⁴⁾은 제59조 제1항⁵⁾ 보다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위험성이 더 크거나 행위태양이 더 불법성이 큰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법정형도, 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전자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⁶⁾은 매매나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

-
- 4)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5)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 6)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마약류 매매 등을 하였고,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이 넘음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매매 등을 배제하고 있어, 법정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⑤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대상에서 매매 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와 “판매목적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특정범죄가중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⁷⁾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중 마약과 관련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중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바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 실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특정범죄가중법이 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제11조 제1항⁸⁾을 개정하면서 “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7)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8)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를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한 죄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이 마약관리법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만 올려놓아,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⁹⁾도, 제11조 제2항과 동일하게 마약류가액이 5,000만 원 이상(제1호)이거나 500만 원 이상(제1호)일 경우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위에 제공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수출입·제조뿐만 아니라 매매 등인 경우에도 불법성의 정도나 마약류의 양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가중처벌하더라도, 마약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가 있으므로,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위 2002헌바24 결정, 2011헌바2 결정)에도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⑥ 매매 등을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의 부당성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매매 등이 빠진 것은, 특정범죄가중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제11조 제1항에서 매매 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마약류가액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2002헌바 결정 이후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마약류관리법과 다른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설정하지 않고, 매매 등을 제외한 수출입·제조 등은 가중처벌하겠다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하였는데, 2016. 1. 6. 특정범죄가중법을 개정하면서 2011헌바2 결정에 따라 마약류가액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매매 등의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방향입니다. 특히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에서 제11조 제1항 적용대상

9)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 마약류보다 더 가벼운 마약류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더라도 마약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함에도, 그보다 더 위험성이 큰 마약류 매매 등을 하였음에도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법정형 설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⑦ 양형기준에서 매매 등도 가액에 따라 양형범위를 가중하는 것의 적절성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매매 등을 제외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가중을 하지 않는 경우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¹⁰⁾), 매매 등을 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현행 양형기준에 따라 제2유형은 기본구간 선택시 5년에서 8년¹¹⁾까지, 감경구간 선택시 3년¹²⁾에서 6년까지, 가중구간 선택시 7년에서 10년¹³⁾까지, 제3유형은 기본구간 선택시 8년에서 11년까지, 감경구간 선택시 6년에서 9년까지, 가중구간 선택시 10년에서 14년까지의 양형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당합니다.

⑧ 양형기준 도입시의 논의

현행 양형기준은 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현행 양형기준 개정 논의를 할 당시에는 이미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양형기준 이전에 최초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1. 3. 21. 양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1.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에 마약범죄 양형기준(이하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¹⁴⁾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범의 제2유형과 제3유형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대신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대량범의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적용 법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대신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을 기재한 것이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결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할 당시 2가지 초안이 있었으나 채택된 초안

10)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11) 수정안에 따르면 9년으로 상한이 수정됩니다.

12) 수정안에 따르면 3년 6개월로 하한이 수정됩니다.

13) 수정안에 따르면 11년으로 상한이 수정됩니다.

14)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 검토내용을 보면, 매매·수수 등 유통사범 유형의 경우에도 ‘대량범 유형에서는 가액에 의한 세부유형 분류’를 명시했다고 기재하여¹⁵⁾, 매매·수수 등의 유형도 마약류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량범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약 매매·수수 등 유통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¹⁶⁾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대유형 2. 매매·알선 등에서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으로 가중된 양형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면서 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며, 최초로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 채택된 초안을 보더라도, 매매·수수 등 유통사범의 유형으로 영업범과 상습범을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대량범으로 적용하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¹⁷⁾

⑨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시의 논의

2015. 4. 법무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14625호)」에 관한 의견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보다 가벼운 마약범죄를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중처벌 규정과 죄형간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¹⁸⁾ 또한 2015. 11. 24. 제337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도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에 법무부도 찬성하였고, 법원행정처도 반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⁹⁾

그런데 당시 논의에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을 범한 경우로서 매매 등을 한 경우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범죄로서 매매 등을 하였고 마약류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벼운 제59조 제1항의 범죄를 저질러서 마약류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볍게 되어 법체계상 불균형하게 된다는 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의 개정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부 등이 제시

15) 2010. 12. 22. 양형위원회 제30차 회의 전문위원 업무보고 11쪽 이하.

16)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 2010. 12. 22. 양형위원회 제30차 회의 전문위원 업무보고 11쪽 이하.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14625호)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19) 2015. 11. 24. 제337회 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5쪽.

한 의견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체계상 불균형이 존재하나, 양형기준으로 마약류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의 범죄이며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대량범으로 양형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상한 30년을 감안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대량범의 유형으로 명시하면서, 수출입·제조 등이 아닌 매매 등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을 여전히 대량범의 적용법조로 남겨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⑩ 검토할 내용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상의 범죄로 수출입·제조 등을 한 경우는 적용법조에 마약류가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를 명시하고,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상의 범죄로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법조에 마약류관리법 대상조문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관련 수정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어 2016. 1. 6.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을 낮추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를 반영하고,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에 존재하지 않는 3,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을 세분화한 것을 삭제하고,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상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개정을 반영하고 특정범죄가중법에 맞는 유형 재분류이므로 찬성합니다.

3) 집행유예 기준 - 찬성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8. 1. 6.부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은 집행유예 기준에서 말하는 참작사유로서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임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검토

- 마약류별 기본 형량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기본' 중심으로>

구분	투약, 단순소지 등	매매, 알선 등	수출입, 제조 등
환각물질	6월 - 1년	6월 - 1년 4월	
향정 마목	8월 - 1년6월		
향정 라목	8월 - 1년6월	6월 - 1년 4월	10월 - 2년
대마	8월 - 1년6월	1년 - 2년	2년 - 4년
향정 다목	10월 - 2년	1년 - 2년	2년 - 4년
향정 나목	10월 - 2년	1년 - 2년	4년 - 7년
향정 가목	1년 - 3년	4년 - 7년	4년 - 7년
마약	1년 - 3년	4년 - 7년	4년 - 7년
영리목적 상습		7년 - 11년	7년 - 11년

- 보통 마약류 범죄의 경우, '투약 및 단순 소지'보다는 '매매 등'을 더 강력히 처벌하는 경향이며, 법률에도 그런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 이에 반해 환각물질과 향정 라목의 경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역 방향으로 형량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향정 가목과 마약의 경우, '매매, 알선 등'을 '수출입 및 제조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외의 마약류에서 차별을 두는 것과는 매우 상이한 접근으로 보인다.
- 대마의 경우는 '투약, 단순 소지 등'은 '향정 마목, 라목'의 수준으로 매매 알선 등 및 수출입 제조 등은 향정 다목과 동일선상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투약 및 단순소지 보다는 매매 알선 등을 더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및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의견

○ 이런 근거로 표2로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2.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기본' 중심으로> 개선안

구분	투약, 단순소지 등	매매, 알선 등	수출입, 제조 등
환각물질	6월 - 1년	6월 - 1년 4월	
향정 마목	8월 - 1년6월		
향정 라목	8월 - 1년6월	8월 - 1년 8월	10월 - 2년
대마	8월 - 1년6월	1년 - 2년	2년 - 4년
향정 다목	10월 - 2년	1년 - 2년	2년 - 4년
향정 나목	10월 - 2년	1년 - 2년	4년 - 7년
향정 가목	1년 - 3년	4년 - 7년	4년 - 7년
마약	1년 - 3년	4년 - 7년	4년 - 7년
영리목적 상습		7년 - 11년	7년 - 11년

○ 이런 의견에 따라. 감경 및 가중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이외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다만, 대마와 관련한 규제 접근법은 매우 급변할 수 있으므로,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VI.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0. 9. 14.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0. 9. 하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0. 10. 초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Ⅶ.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 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준수를 위한 절차

-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위임규정)

-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양형기준안의 공개)

위원회는 제16조(양형기준의 설정) 제1항 제2호(양형기준안 작성)의 양형기준

안 및 설명서를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104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양형기준안(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방 부	법무관리관
12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3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14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5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6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7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8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9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20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21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총무간사
22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23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4	한 국 여 성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5	연구기관	한국젠더법학회	총무위원장	
26	유관기관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27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8		한국범죄방지재단	사무총장	
29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33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3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성폭력방지팀장	
35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3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3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38	참여연대		사범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3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총무부장	
40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41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42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43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44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45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46	시 민 단 체	전 국 성 폭 력 상 담 소 협 의 회	사무처장
47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사무총장
48		다 시 함 께 상 담 센 터	소장
49		탁 틴 내 일	사무국장
50		한 국 사 이 버 성 폭 력 대 응 센 터	소장
51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	사무국장
52		성 매 매 문 제 해 결 을 위 한 전 국 연 대	사무국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20. 9. 21. ~ 10. 21.

○ 의견조회 취합 : 2020. 10. 22.

※ 의견수렴 결과는 의견수렴 후 해당 안건의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 예정

V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리셋, 추적단 불꽃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서 제출

- ▶ 아래 설문조사 및 의견서는 2020. 7. 10.과 2020. 8. 27.(수정본 2020. 8. 28.)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각 접수되었습니다.

가. 2020. 7. 10. 제출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요약본>	
수신 : 양형위원회	
발신 : 리셋 x 추적단 불꽃	Projectreset@protonmail.ch 56flame@naver.com
매수 : 총 7쪽	

리셋(ReSET) X 추적단 불꽃 연합 양형위 전달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힘쓰는 양형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추적단 불꽃과 리셋은 6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60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3. 공식적인 의견서 제출은 8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부디 해당 요약본을 참고하시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효n수는 6360명이다.

6360명 중 디지털 성범죄 판결에 있어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6310명(99.2%)**, 아니다라고 답변한 **50명(0.8%)**

6360명 중 디지털 성범죄 판결에 있어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변한 **158명(2.5%)** , 아니다라고 답변한 **6202명(97.5%)**

△ 응답자 중 **6,098명(95.8%)**이 미디어/주변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6,307명(99.2%)**이 접한 디지털 성범죄의 선고형량범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6,281명(98.8%)**은 사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 모든 응답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 '그렇다', 매우 아니다와 아니다를 합쳐 '아니다'로 집계함

△ 응답자 **3,982명(62.6%)**은 선고형량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본 설문의 문항들 중 몇 없는,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지 않는 문항이다. 선고 형량이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2,271명(35.7%)** 존재한다. 선고형량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성범죄의 선고형량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한다.

△ 디지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양형위/사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묻는 주관식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3,812명**으로, '가중처벌'과 '형량강화'등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맞는 혹은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등 피해자 위주의 선고를 하라는 응답과 가해자에게 이입하지 말라는 응답 등이 있었다.

△ 응답자 중 **4,340명(68.3%)**이 법관들 간에 형량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하는 근거다. 다만 법관들 간에 형량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937명(14.7%)**으로 일부 존재하며, 보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1,083(17%)명** 존재한다. 타 질문과의 상관관계를 볼 때, 형량의 차이가 난다고 보는 사람들도 적절한 형량을 선고하는 판사들과 적절치 않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사들로 나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적절하지 않은 처벌을 하는 중이며 다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들 간에 형량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며, n번방 유사사건에 대한 가중 요소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했다.

△ 시민들이 스스로 책정한 디지털 성범죄 및 각 범죄당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다. (10년 이상은 극단값으로 제외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최소 형량범위의 평균 87.5개월(7년), 최빈값 120개월(10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최대 형량범위의 평균 95.67개월(7년), 최빈값 120개월(10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최소 형량범위의 평균 70.83개월(5년), 최빈값 60개월(5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최대 형량범위의 평균 98.32개월(8년), 최빈값 120개월(10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최소 형량범위의 평균 63.84개월(5년), 최빈값 60개월(5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최대 형량범위의 평균 82.93개월(6년), 최빈값 120개월(10년)

△ 각 범죄의 법정최고형 이상 응답을 극단값으로 처리했을 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6,234명(98%)**이 현행법 상 최고형인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제시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6,028명(95%)**이 현행법 상 최고형인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제시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또한 **6,240명(98%)**이 현행법 상 최고형인 징역2년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법정형조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응답자 중 6,348명(99.8%)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숨방망이'라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기존에 양형기준을 마련하던 방식과 같이 관련 판례들의 선고를 참고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을 밝힌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합당하며, 섬세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숨방망이 처벌의 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양형위원회가 4718명(74%), 수사기관(검찰과 경찰) 5376명(85%), **판사 6131명(96%)**, 국회의원 4668명(73%)의 비율을 차지했다. 복수응답이 가능했으며, **6360명의 응답자 중 6131명이 숨방망이 처벌의 주 책임이 판사라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 대부분이 판사가 '숨방망이 처벌'의 주체라고 생각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선택, 주관식)

: 해당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6,630명 중 **2,340명**이다.

그 중 '양형위원회'를 단독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5명이었으며, 양형기준을 낮게 잡는 것과, 판사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결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수사기관'을 단독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11명으로, 신고 반려나 2차가해, 검찰의 항소 포기과 경찰의 소극적인 기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판사'를 단독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345명으로, 법정형보다 낮은 선고형과 작량감경의

남용, 남성 판사들의 잘못된 성관념 및 낮은 성인지감수성, 형량을 선고하는 주체이기 때문 등이 그 이유였다. 일부 판사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감경사유에 대한 불신 또한 다수 확인되었다.

‘국회의원’을 단독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20명으로, 법정형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었다. 즉 법으로 정해진 형량 ‘내에서’ 선고하는 것이므로 최소 형량과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타났다.

△ 응답자 중 5,816명(91.4%)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n번방 유사사건의 가중요소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감경요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선택, 주관식)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해당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1,552명이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양형자문단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판결에 대한 불신과 시대 변화에 도태되는 사법부 및 양형기준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며, 판사들과 현 양형위원회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였다. 사법부의 구성이 중년 남성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합할,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있었다.

△ n번방과 유사한 사건 범죄자에게 적용된 가중/감경사유 중 각 사유가 가중/감경사유로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적합한 가중사유라고 판단	적합하지 않은 가중사유라고 판단
98.2% '반복 (여러 차례 범행)'	8.7% '반성,인정안함'
98% '누범/동종범죄(성범죄)전력'	4.5% '피해자와 미합의/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97.8%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큼/ 성적수치심상당/심각한 피해 우려'	2.9% '죄질불량중함/공익침해/엄중처벌해야'
94.6% '죄질불량중함/공익침해/엄중처벌해야'	1.3%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큼/ 성적수치심상당/심각한 피해 우려'
90% '피해자와 미합의/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0.9% '반복 (여러 차례 범행)'
83.4% '반성,인정안함'	0.9% '누범/동종범죄(성범죄)전력'

대부분 n번방 유사사건에서 사용된 가중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반성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떨어져 약 **5,304명(83.4%)**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549명(8.7%)**은 해당 이유로 인해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유사사건에서 사용된 가중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일수록 해당 사건들에서 사용된 감경요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적합한 감경사유라고 판단	적합하지 않은 감경사유라고 판단
1.5% '반성/시인/자백'	99.4%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2% '외부 유출 없음/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음(피해사진/영상)'	99.3% '호기심/충동적으로 범행'
0.9% '피해자와 합의'	99.3%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0.8% '피해자 신원 노출 안됨/신체 일부만 노출'	99.1% '영리 목적 아님'
0.7% '초범'	98.9% '부양가족 있음'
0.6% '범행1회에 그친 점'	98.6% '피고인 가족 선처 탄원'
0.5% '피고인 가족 선처 탄원'	98.5% '초범'
0.5% '스스로 성교육 강의수강/재범하지 않을것 다짐'	98.4% '스스로 성교육 강의수강/재범하지 않을것 다짐'
0.4% '호기심/충동적으로 범행'	98.3% '범행1회에 그친 점'
0.4%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97.7% '피해자 신원 노출 안됨/신체 일부만 노출'
0.4% '영리 목적 아님'	97.1%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0.4% '부양가족 있음'	95.5% '외부 유출 없음/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음(피해사진/영상)'
0.4%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95.3% '피해자와 합의'
0.4%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95.3% '반성/시인/자백'

대부분 n번방 유사사건에서 사용된 감경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호기심/충동적으로 범행',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영리 목적 아님'의 경우 응답자의 **99% 이상** 적합하지 않은 감경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반성/시인/자백'이 적합한 감경사유라고 판단한 경우가 94명으로 1%대에 그치긴 하지만, n번방 유사사건에서 사용된 감경사유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적합한 감경사유로 판단되었다.

△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인자 중 가중사유에 대해 각 기준이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99.0% 디지털 성범죄 일반	1-12. 동종 전과
98.7% 디지털 성범죄 일반	1-10.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98.7% 디지털 성범죄 일반	1-3.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98.6% 디지털 성범죄 일반	1-15. 중한 상해
98.4% 디지털 성범죄 일반	1-13.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98.0% 디지털 성범죄 일반, 0.6% 아동 청소년에만	1-7.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98.0% 디지털 성범죄 일반	1-2.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97.8% 디지털 성범죄 일반, 0.8%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1-9. 비난 동기
97.4% 디지털 성범죄 일반, 1.1% 아동 청소년에만, 0.5%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1-14. 경미한 상해
97.3% 디지털성범죄 일반, 0.6% 아동청소년에만, 0.5% 아동청소년과 카메라촬영에만	1-1.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97.3% 디지털 성범죄 일반, 0.9% 아동 청소년에만, 0.5%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1-11. 인적 신뢰관계 이용
97.2% 디지털 성범죄 일반, 1.8%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1-16. 반성 없음(단순부인 제외)
96.4% 디지털 성범죄 일반, 2% 아동 청소년에만, 0.6% 영향 미치면 안 된다	1-5. 임신
96.4% 디지털 성범죄 일반, 1.7% 아동 청소년에만	1-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95.9% 디지털 성범죄 일반, 1.7% 아동 청소년에만, 1.2% 아동청소년과 카메라 촬영에만	1-6.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95.6% 디지털 성범죄 일반	1-8. 계획적 범행

△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인자 중 감경사유에 대해 각 기준이 형량 선고에 영향을 미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91.6%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7.0% 디지털 성범죄 일반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처벌불원
---------------------------------------	--------------------

91.5%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6.8% 디지털 성범죄 일반, 0.6%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상당 금액 공탁
91.3%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7.2% 디지털 성범죄 일반, 0.6%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89.3%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7.5% 디지털 성범죄 일반, 1.5% 통신매체이용음란	소극 가담
84.7%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9.6% 디지털 성범죄 일반, 1.2% 카메라 촬영, 2.0% 통신매체이용음란, 0.9% 카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불원

△ 디지털성범죄 일반의 양형기준 설정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6,630명 중 **1,634명**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저지를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식의 해외 사법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무관용 원칙 및 감경 반대 등이 가장 많았고,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혹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과 주취감경에 반대하며 신상공개 기준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이한 점은 가해자의 검색기록과 평소 인터넷 등에 작성한 글을 확인하여 가중요소로 삼으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을 묻는 질문(선택)에 응답한 사람은 6,360명 중 **941명**이다.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는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응답들이 있었고, 손정우 사건 때문인지 미국법을 도입하라거나 가정 혹은 아이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양형기준 세웠다가 쓸데없는 부차적인 피해만 는다'는 특이값도 있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혹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과 주취감경에 반대하며 신상공개 기준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을 묻는 질문(선택)에 응답한 사람은 6,360명 중 **715명**이다. 역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주취감경에 반대하며 신상공개 기준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는 우선 신체 부위와 관계없이 처벌하며 판례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 디지털 성'범죄'임에도 가볍게 여겨지고 있으니 그 심각성을 양형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횟수 및 소지/촬영/구매한 성 착취물에 비례하여 가중 처벌하라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불법촬영기기를 구매한 것 자체로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을 묻는 질문(선택)에 응답한 사람은 6,360명 중 609명이다. 모든 유포/소지/구매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금전거래 등 '영리'를 취득한 경우 가중 처벌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유포 범위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특정 직업군일 경우(교사 혹은 형사사법시스템 종사자) 가중 처벌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감경사유로 작용해왔던 호기심,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오히려 가중사유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는 것을 가중사유로 두어 범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지인, 가족 등일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두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를 격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2020. 8. 27.(수정본 2020. 8. 28.) 제출 : 의견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민 대상 설문조사

의견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민대상 설문조사

조사 담당자 : 리셋, 추적단 불꽃

응답자 : 대한민국 국민

응답자 수 : 7,509명

응답 기간: 2020.06.03. ~ 2020.08.20.

설문 조사 플랫폼 : 화난사람들

<목차>

1. 들어가며

2. 국민의견 수렴 과정 및 경과

가. 설문조사 담당자 소개

나. 국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다. 국민의견 수집 경위 및 국민의견 수집 방법

라. 국민의견 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집 경과

3. 국민의견 응답 분석 결과

4. 마치며

가. [별지] 의견서

1. 들어가며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국민은 사법부에 피해자 중심적인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셋과 불꽃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7,509명의 의견을 모아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 사이의 괴리감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성 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항목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 범위 및 구체적 양형 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 인자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비단 텔레그램 내에서 일어나는 성 착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양형위원회에 전달하고자 본 설문조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국민의견 수렴 과정 및 경과

가. 설문조사 담당자 소개

- 리셋(ReSET: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은 2019년 12월 5일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낀 일반 여성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조직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서로 모르던 사이의 여성 개개인들이 모여으며 익명의 활동을 바탕으로 온라인 중심 활동을 전개하며 신변보호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SNS 내 디지털 성범죄 단체방 DB를 구축해 사이버수사대와 수사공조를 진행하여 경찰청의 수사가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국회긴급간담회와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긴급회의 등에 참여하였으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및 디지털성범죄의 현 세태를 브리핑하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 추적단 불꽃(Team Flame)은 시민 기자단입니다. 2019년 7월부터 N번방, 지인 능욕방,

딤페이스 방, 박사방 등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는 텔레그램 대화방 백여 개에 잠입 취재했습니다. 약 1년 2개월간 지속적으로 텔레그램 및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SNS를 수시로 확인하고 제보를 받아 경찰과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 목소리를 기록하는데 힘쓰는 중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온라인 성 문화를 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나. 국민의견 수렴의 필요성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라는 이유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을 믿지 못하였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²⁰), 청와대 국민청원의 여성폭력·안전 부분에 올라온 청원의 내용 중 54.6%는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²¹). 따라서 국민들이 갖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과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최소한으로라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판사의 판결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양형위원회의 역할이기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어 일상에서 공포를 느끼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3월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적 이슈가 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모았습니다. 최종범 불법촬영협박 및 데이트폭력 사건, 문형욱 n번방 사건, 조주빈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도 아니며, 더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검거가 진행되었음에도 각종 성 착취 단체방과 범죄자들은 음지에서 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실질적인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그동안 지속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하며,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 억제에 실패할 것이라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결과입니다. 부디 본 의견서를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정형을 준수하며 국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는 판결들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20) 연성진, 홍영오 (2008).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윤덕경, 김정혜, 천재영, 김영미 (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 국민의견 수집 경위 및 국민의견 수집 방법

리셋과 불꽃은 지난 4월 한 시민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세워지기 전에 국민의 여론을 모아 양형위원회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에 동의해 국민의견을 수집했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하 '화난사람들'²²⁾) 측에서 제공한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을 실시했으며 총 설문 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라. 국민의견 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집 경과

○ 국민 의견 페이지를 통한 국민 의견 수집은 2020. 6. 3. 경부터 2020. 8. 20.까지 총 79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수는 7,509명으로, 응답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20대가 5,586명(74.4%)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10대가 1,109명(14.8%)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30대 648명(8.6%), 40대 99명(1.3%), 50대 36명(0.5%) 60대 이상 21명(0.3%) 순입니다(결측값 10명 제외, **연령대 확인 가능한 응답자 수 7,499명, 총 유효 응답자 수는 7,509명**이 맞습니다.)

○ 지난 6~7월 통계를 냈던 설문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극소수를 제외한 인원(99.2%·6,310명)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가중돼야 한다'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감경돼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아니다"라는 응답(97.5%·6,202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해당 결과는 2차 설문조사 종료 이후 전체 통계치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까지 수집된 전체 설문 결과에 따르면, 99.2%의 인원인 7,451명이 디지털 성범죄 판결에 있어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판결에 있어 형량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본 응답자는 단지 2.5%(158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국민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판결할 때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야 하지만,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9% 이상'은 n 번 방 유사 사건에서 감경 사유로 적용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호기심/충동적으로 범행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영리 목적 아님 △

22) 화난사람들은 국민들이 법적 방법 내지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0>)

부양가족 있음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고 바라봤습니다. 그 외 △피고인 가족 선처 탄원 △초범 △스스로 성교육 강의 수강/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범행 1회에 그친 점 △피해자 신원 노출 안 됨/신체 일부만 노출 △외부 유출 없음/제삼자에게 유출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 △반성/시인/자백에 대해서도 ‘95% 이상’의 응답자들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응답자의 95.7%가 미디어 혹은 주변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자주 접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그동안의 판례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관들 간에 형량 차이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선고 형량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하며, 양형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n번방 유사 사건들에 대한 가중사유는 적합하였지만 감경 사유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응답자의 98.8%가 사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양형위원회 및 사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묻는 주관식 질문(응답자 4,496명)에 ‘가중처벌’과 ‘형량 강화’등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형량 언급 1,901명, 처벌 언급 1,589명, 가중 언급 344명, 중한 언급 197명 등)

○ 응답자의 5,081명인 67.7%가 법관들 간 형량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관해 묻자, 성별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과(성별 관련 언급 1,043명) 성 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을 언급한 경우가 있었고(약 400건), 감형 사유가 자의적이라거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응답, 형량이 가볍다는 응답,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응답 등 선고형량이 낮다는 응답이 주였습니다. 오덕식 판사의 실명을 언급한 경우도 128개나 존재하였습니다.

○ 응답자의 7,497명인 99.8%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관련 판례들의 선고를 참고하여 양 극단 값을 제외한 평균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헛된 일일 수 있으며, 기존의 판례들보다 더 강력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 솜방망이 처벌의 주 책임을 묻는 말(복수 응답 가능)에는 7,509명 중 7,246명(96.5%)이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의 주체라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6번 질문에서 '양형위원회'를 단독으로 선택한 응답자는 19명뿐으로, 양형기준을 낮게 잡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의 책임이라거나, 판사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결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 응답자의 6,856명인 91.4%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양형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양형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자주 접하였으며, 형량 범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고,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법관들 간에 형량 차이가 난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n번방 유사 사건의 가중요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감경요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양형 자문단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신과 시대 변화에 도태되는 사법부 및 양형기준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며, 판사들과 현 양형위원회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구성이 중년 남성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합할,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있었습니다.

○ 양형기준 마련이 디지털 성범죄 적절한 처벌의 '근본책'으로 역부족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작량감경 등의 이유로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으며, 최소한 피의자를 법정형에 준하게 처벌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직접 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책정한 결과,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법정형 그 자체부터 국민의 법 감정과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마련된 법정형부터가 국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법정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례들이 국민들에게서 공감과 동의를 끌어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양형위원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3. 국민의견 응답 분석 결과

시민 양형 설문조사 통계결과 (유효n수 7,509)

응답자 인구특성 (유효n수 7,499/결측값 10개)

[표 1] 응답자 연령대

	응답자 수	비율
10대	1109	14.8%
20대	5586	74.4%
30대	648	8.6%
40대	99	1.3%
50대	36	0.5%
60대	2	0.0%
60대 이상	19	0.3%
결측값	10	0.1%
전체	7509	100.0%

I. 기초 문항

1. 디지털 성범죄 판결에 있어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야 한다.

그렇다: 7451명(99.2%), 아니다: 58명(0.8%)

2. 디지털 성범죄 판결에 있어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어야 한다.

그렇다: 186명(2.5%), 아니다: 7323명(97.5%)

II. 형량 관련 문항

1. 7,188명인 95.7%가 미디어/주변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한다고 응답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건을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현행 형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법관들 간에 형량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성범죄 선고형량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하며,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n번방 유사사건들에 대한 가중사유가 적합하였다고 생각하며, 유사사건에 대한 감경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7,448명인 99.2%가 미디어 혹은 주변에서 접한 디지털 성범죄의 선고형량범위가 적절

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였고,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형량의 범죄억제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성범죄 선고형량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하며,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n번방 유사사건들에 대한 가중사유가 적합하였다고 생각하며, 유사사건에 대한 감경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 7,421명인 **98.8%**는 사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였고, 형량범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형량의 범죄억제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법관들 간에 형량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하고, 양형자문단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유사사건에 사용된 가중사유는 적합하지만, n번방 유사사건에 대한 감경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4,754명인 63.3% 선고형량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본 설문문의 문항들 중 몇 없는, 응답 비율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지 않는 문항이다. 선고형량이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2,643명(35.1%) 존재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고형량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범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법관들 간에 형량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n번방 유사사건에 대한 감경사유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5. 디지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양형위/사법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으며, 해당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4,496명이다.

‘가중처벌’과 ‘형량강화’등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으며(형량 언급 1901명, 처벌 언급 1589명, 가중 언급 344명, 중한 언급 197명 등), 피해자의 고통에 맞는 혹은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등 피해자 위주의 선고를 하라는 응답(피해자 언급 870명, 고통 언급 105명)과 가해자에게 이입하지 말라는 응답(이입 언급 870명, 봐주기 언급 46명 등), 감형하지 말라는 응답(감형 언급 523명, 솜방망이 언급 135명, 반성문 언급 131명 등) 등이 있었다.

6. 5,081명인 67.7%의 응답자들이 법관들 간 디지털 성범죄 판결의 형량에 차이가 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근거이다.

본 설문문의 문항들 중 몇 없는,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지 않는 문항이다. 법관들 간에 형량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1,134명(15.1%)로 일부지만 존재하며 보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1,294명(17.2%) 존재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법관들 간에 형량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디지털 성범죄를 자주 접하였고,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했으며, 형량이 범죄억제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며, 양형자문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n번방 유사사건에 대한 가중요소가 적절하였다고 생각했다.

7. 법관들 간에 **디지털 성범죄 판결의 형량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물었으며, 해당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2,867명이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형량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과(성별 관련 언급 1,043명), **성인지감수성/젠더감수성**을 언급한 경우가 있었고(약 400건), 감형 사유가 자의적이거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응답, 형량이 가볍다는 응답,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응답 등 선고형량이 낮다는 응답이 주였다. 오덕식 판사의 실명을 언급한 경우도 128개나 존재하였다.

8.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를 대상으로 **형량 범위**를 시민이 직접 책정하게 하였다. 10년(120개월) 이상은 극단값으로 제거한 경우 각 범죄 당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2]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범죄 시민 측정 형량범위

최소 형량범위 극단값	3,007개	최대 형량범위 극단값	6,724개
최소 형량범위 평균	87.71개월 (7년)	최대 형량범위 평균	96.52개월 (8년)
최소 형량범위 최빈값	120개월 (10년)	최대 형량범위 최빈값	120개월 (10년)

[표 3]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시민 측정 형량범위

최소 형량범위 극단값	1,961개	최대 형량범위 극단값	5,268개
최소 형량범위 평균	70.67개월 (6년)	최대 형량범위 평균	98.55개월 (8년)
최소 형량범위 최빈값	60개월 (5년)	최대 형량범위 최빈값	120개월 (10년)

[표 4]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 시민 측정 형량범위

최소 형량범위 극단값	2,087개	최대 형량범위 극단값	4,940개
최소 형량범위 평균	63.93개월 (5년)	최대 형량범위 평균	83.53개월 (7년)
최소 형량범위 최빈값	60개월 (5년)	최대 형량범위 최빈값	120개월 (10년)

각 범죄의 최대 형량범위 중 10년 이상을 응답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6,724명**,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5,268명**,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는 **4,940명**으로 법정형보다 높은 형량을 응답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는 감경 등의 이유로 법정형 보다 낮은 형을 받아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다. 피의자가 법정 최고 형량만이라도 받게 하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법정형인데, 양형기준이 그에마저도 미치지 못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9.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7,497명인 **99.8%**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일수록 디지털 성범죄를 자주 주위에서 접하였고, 형량범위는 부적절하다고 느꼈으며,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꼈고, 형량에 차이가 난다고 보았으며, 양형자문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n번방 유사사건의 가중요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유사사건의 감경요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0.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의 주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자 **4,970명**은 양형위원회를 택했고, **6,348명**은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을 지목하였으며, 가장 많은 **7,243명(96.5%)**이 판사가 원인이라고 보았고, 마지막으로 **5,572명**이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복수응답 가능).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의 주 책임자를 지목한 이유를 물었다. 해당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2,723명**이다. '양형위원회'를 단독으로 선택한 응답자 중 양형기준을 낮게 잡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의 책임이라거나, 판사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결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11. 디지털성범죄에 양형자문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6,856명인 **91.4%**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자주 접하였으며, 형량범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고, 사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법관들 간에 형량 차이가 난다고 보았고, 디지털 성범죄

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n번방 유사사건의 가중요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감경요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양형자문단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모두 1,966명이 응답하였다.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판결에 대한 불신과 시대 변화에 도태되는 사법부 및 양형기준**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며, 판사들과 현 양형위원회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기도 하였다. 사법부의 구성이 중년 남성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합할,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있었다.

12. n번방과 유사한 사건 범죄에서 적용된 가중사유들의 적합도를 판단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n번방 유사사건 가중사유의 적합도

적합한 가중사유라고 판단	적합하지 않은 가중사유라고 판단
7,381명 98.3% '반복 (여러 차례 범행)'	621명 8.2% '반성, 인정안함'
7,363명 98.1% '누범/동종범죄(성범죄)전력'	324명 4.3% '피해자와 미합의/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7,348명 97.8%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큼/성적수치심상당/심각한 피해 우려'	217명 2.9% '죄질 불량중함/공익침해/엄중처벌해야'
7,112명 94.8% '죄질불량중함/공익침해/엄중처벌해야'	93명 1.2%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큼/성적수치심상당/심각한 피해 우려'
6,795명 90.5% '피해자와 미합의/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74명 1.0% '반복 (여러 차례 범행)'
6,308명 84% '반성,인정안함'	70명 1.0% '누범/동종범죄(성범죄)전력'

대부분 n번방 유사사건에서 사용된 가중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반성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떨어져 약 80%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0%은 해당 이유로 인해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13. n번방과 유사한 사건 범죄에서 적용된 감경사유들의 적합도를 판단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n번방 유사사건 감경사유의 적합도

적합한 감경사유라고 판단	적합하지 않은 감경사유라고 판단
120명 1.6% '반성/시인/자백'	7,464명 99.4%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95명 1.3% '외부 유출 없음/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음(피해사진/영상)'	7,462명 99.4% '호기심/충동적으로 범행'
73명 0.9% '피해자와 합의'	7,450명 99.2%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59명 0.8% '피해자 신원 노출 안됨/신체 일부만 노출'	7,449명 99.2% '영리 목적 아님'
39명 0.7% '초범' *해당 문항 응답자 6,260명	7,447명 99.2%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39명 0.6% '범행1회에 그친 점'	7,433명 99% '부양가족 있음'
36명 0.5% '피고인 가족 선처 탄원'	7,405명 98.6% '피고인 가족 선처 탄원'
27명 0.5% '스스로 성교육 강의수강/재범하지 않을것 다짐'	6,267명 98.5% '초범' *해당 문항 응답자 6,260명
24명 0.4% '호기심/충동적으로 범행'	7,397명 98.4% '스스로 성교육 강의수강/재범하지 않을것 다짐'
28명 0.4%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7,390명 98.5% '범행1회에 그친 점'
28명 0.4% '영리 목적 아님'	7,337명 97.7% '피해자 신원 노출 안됨/신체 일부만 노출'
28명 0.4% '부양가족 있음'	7,172명 95.5% '외부 유출 없음/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음(피해사진/영상)'
28명 0.4%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7,161명 95.4% '피해자와 합의'
28명 0.4%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7,140명 95.1% '반성/시인/자백'

대부분 n번방 유사사건에서 사용된 감경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호기심/충동적으로 범행',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영리 목적 아님',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부양가족 있음'의 경우 99% 이상이 적합하지 않은 감경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반성/시인/자백'이 적합한 감경사유라고 판단한 경우가 비록 1.6%이긴 하지만 비교적 높았다.

Ⅲ. 양형관련 문항

1.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인자 가중사유 중, 각 디지털 성범죄 별 형량 선고에 적용될 적합도를 판단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성범죄 가중사유의 디지털 성범죄 적용 적합도

동종 전과	디지털 성범죄 일반 98.9% 7,430명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	디지털 성범죄 일반 98.8% 7,416명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	디지털 성범죄 일반 98.7% 7,409명
중한 상해	디지털 성범죄 일반 98.6% 7,402명
계획적 범행	디지털 성범죄 일반 98.6% 7,402명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디지털 성범죄 일반 98.4% 6,261명 *해당 문항 응답자 6,260명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디지털 성범죄 일반 98% 7,359명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디지털 성범죄 일반 98% 7,361명
비난 동기	디지털 성범죄 일반 97.8% 7,345명
경미한 상해	디지털 성범죄 일반 97.4% 7,312명
인적 신뢰관계 이용	디지털 성범죄 일반 97.4% 7,311명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디지털 성범죄 일반 97.3% 7,310명
반성 없음(단순부인 제외)	디지털 성범죄 일반 97.3% 7,303명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1.7% 130명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일반 96.5% 7,246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만 1.7% 124명
임신	디지털 성범죄 일반 96.4% 7,237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만 2% 151명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디지털 성범죄 일반 96% 7,207명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만 1.7% 124명

양형위원회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인자 중 가중요인이 디지털 성범죄 일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시민이 모든 요인에서 응답자의 95%를 넘었다.

2.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인자 감경사유 중, 각 디지털 성범죄 별 형량 선고에 적용될 적합도를 판단하게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성범죄 감경사유의 디지털 성범죄 적용 적합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처벌불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91.4% 6,865명 디지털성범죄 일반에 적용 7.2% 541명
상당 금액 공탁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91.4% 6,863명 디지털성범죄 일반에 적용 7.0% 523명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91.2% 6,849명 디지털성범죄 일반에 적용 7.2% 544명
소극 가담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89.3% 6,705명 디지털성범죄 일반에 적용 7.6% 567명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만 적용 1.5% 112명
처벌불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84.6% 6,349명 디지털성범죄 일반에 적용 9.8% 734명

양형위원회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인자 중 감경요인이 그 어떤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한 시민이 모든 요인에서 응답자의 80%를 넘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처벌불원**’이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응답자가 6,349명인 **84.6%**로 비교적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소극 가담’이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에만 적용하라는 응답이 151명인 1.5%로 다른 요인들의 개별 범죄 적용 응답률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디지털성범죄 일반**의 양형기준 설정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을 물었고 총 **7,509명**이 **응답**하였다. ‘없음’이나 ‘기존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족하다’는 등의 내용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는 **1,916명**이 의견을 주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저지를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식의 해외 사법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무관용 원칙 및 감경 반대** 등이 가장 많았고,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혹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과 **주취감경**에 반대하며 **신상공개 기준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이한 점은 가해자의 검색기록과 평소 인터넷 등에 작성한 글을 확인하여 가중 요소로 삼으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을 물었고 이에 응답한 사람은 1,432명이다. 감형하지 말라거나 무조건 엄벌하라는 등의 내용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는 983명이 의견을 주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 까지는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응답들이 있었고, 손정우 사건 때문인지 미국법을 도입하라거나 가정 혹은 아이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양형기준 세웠다가 쓸데없는 부차적인 피해만 늘음'이라는 특이값도 있었다. 역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혹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과 주취감경에 반대하며 신상공개 기준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5.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을 물었고 1,196명이 응답하였다. 감형하지 말라거나 무조건 엄벌하라는 등의 내용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는 713명이 의견을 주었다. 역시 미국법 도입 및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주취감경에 반대하며 신상공개 기준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는 우선 신체부위와 관계없이 처벌하며 판례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라거나, 디지털 성 '범죄'임에도 가볍게 여겨지고 있으니 그 심각성을 양형기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처음 잡힌 가해자의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횟수 및 소지/촬영/구매한 성착취물에 비례하여 가중처벌하라는 응답이 있었다. 불법촬영기기를 구매한 것 자체로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불법촬영기기를 구매한 것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거나, 불법촬영기기의 구매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판단하라는 의견으로 보인다.

6.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시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을 물었고 총 1,077명이 응답하였다. 감형하지 말라거나 무조건 엄벌하라는 등의 내용 및 결측값을 제외하고는 590명이 의견을 주었다. 모든 유포/소지/구매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금전거래 등 '영리'를 취득한 경우 가중 처벌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유포 범위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특정 직업군일 경우(교사 혹은 형사사법시스템 종사자) 가중 처벌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7. 이 외에도 그동안 감경사유로 작용해왔던 호기심, 주취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등을 오히려 가중사유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는 것을 가중사유로 두어 범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지인, 가족 등일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두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를 격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별지>

1. (1)디지털 성범죄를 주변이나 미디어에서 접한 정도, (2)그 형량범위를 적절하다고 여긴 정도, (3)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정도, (4)디지털 성범죄 판례의 형량이 범죄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5)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에 판사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6)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7)디지털성범죄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8)n번방 유사사건에 사용된 가중요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9)n번방 유사사건에 사용된 감경요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변인으로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1)	(2)	(3)	(4)	(5)	(6)	(7)	(8)	(9)
(1)	상관계수	1	-.083**	-.111**	.006	.063**	.123**	.087**	.096**	-.152**
	p		.000	.000	.616	.000	.000	.000	.000	.000
	N	7509	7509	7509	7509	7509	7509	7509	7509	7509
(2)	상관계수		1	.154**	.030**	-.022	-.185**	-.029*	-.038**	.176**
	p			.000	.009	.055	.000	.014	.001	.000
	N			7509	7509	7509	7509	7509	7509	7509
(3)	상관계수			1	.081**	.023*	-.187**	-.048**	-.045**	.181**
	p				.000	.048	.000	.000	.000	.000
	N				7509	7509	7509	7509	7509	7509
(4)	상관계수				1	.161**	-.014	.010	.001	.045**
	p					.000	.217	.364	.904	.000
	N					7509	7509	7509	7509	7509
(5)	상관계수					1	.028*	.073**	.055**	-.014
	p						.016	.000	.000	.239
	N						7509	7509	7509	7509
(6)	상관계수						1	.069**	.054**	-.265**
	p							.000	.000	.000
	N							7509	7509	7509
(7)	상관계수							1	.084**	-.072**
	p								.000	.000
	N								7509	7509
(8)	상관계수								1	-.103**
	p									.000
	N									7509

*p< .05, **p< .01, ***p< .001

○ 의견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추적단 불꽃과 리셋은 지난 6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국민의 법 감정과 판사의 판결 사이 괴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시민 7,509명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것을 헤아리시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합하고 적절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추적단 불꽃
리셋

※ 의견서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로우데이터’ 첨부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총 450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4.20.(101)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2	2020.4.20.~4.30.(342)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
3	2020.4.22.(1)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양형위원의 성비를 동등한 숫자로 편성하여 달라는 내용
4	2020.4.22.(1)	○ 유사수신행위관련범죄의 양형기준 적용시기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
5	2020.4.24.~5.5.(1)	○ 엄벌주의만으로는 성폭력 없는 사회가 실현되지 않으므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반대한다는 내용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며 법정형 강화가 해당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 엄벌주의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 ○ 가중처벌법이 범죄진정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6	2020.4.26.(1)	○ 디지털성범죄의 명칭을 디지털 인격살인범죄 내지 디지털 인격모독범죄로 정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
7	2020.5.1.~5.2.(2)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
8	2020.5.14.(1)	○ 사기범죄의 형량이 현저히 낮으므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 4. 22.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 4. 22.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는 유사수신행위관련범죄의 양형기준 적용시기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양형기준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은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정보광장 코너에도 관련법령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 4. 26.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 명칭을 디지털 인격살인범죄 내지 디지털 인격모독범죄로 정정하기를 바란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 5. 14.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기범죄의 형량이 현저히 낮으므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 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사기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0. 5. 17.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47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5.16.~5.17.(147)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0. 8. 2.까지 총 14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5.6.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반성문 제출 및 특정 단체 기부 시 양형의 감경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
2	2020.5.11.	○ 양형기준의 '감경·기본·가중' 형량 표기를 국가표준과 어문규범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쓰자는 내용
3	2020.5.24.	○ N번방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마땅하나, N번방 사건은 드문 사례로 국민들의 법 감정 및 여론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
4	2020.5.28.	○ 성인지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는 없으므로 대법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
5	2020.6.2.	○ 강력범죄의 경우 반성문 제출 시 감형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6	2020.6.15.	○ 여러 민원사항 중 양형위원회에 이첩된 내용은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7	2020.6.22.	○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시 나이에 상관없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해 달라는 내용
8	2020.6.25.	○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을 양형사유에서 배제해 줄 것과 가해자의 반성유무를 판사가 아닌 피해자가 판단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판사가 양형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9	2020.6.29.	○ 마약사범 처벌 강화
10	2020.7.6.	○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
11	2020.7.7.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
12	2020.7.9.	○ 전체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13	2020.7.13.	○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달라는 내용
14	2020.8.2.	○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2. 17. 접수번호 : 2AA-2005-0100516)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와 관련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5. 12. 접수번호 : 2AA-2005-0214335)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기준의 ‘감경·기본·가중’ 형량 표기를 국가표준과 어문규범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쓰자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5. 26. 접수번호 : 2AA-2005-0510944)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N번방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마땅하나, N번방 사건은 드문 사례로 국민들의 법 감정 및 여론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귀하의 의견은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5. 28. 접수번호 : 2AA-2005-0615718)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부재 및 재판의 어느 범위까지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주셨으나,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6 02. 접수번호 : 2AA-2006-0056755)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력범죄의 경우 반성문 제출시 감형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

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대통령비서실에 접수(신청번호:1BA-2006-0433892)된 민원 중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이첩(2020. 06. 15. 접수번호:2AA-2006-0446845)된 부분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중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선처를 요구하여도 집행유예 없이 의무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6. 23. 접수번호 : 2AA-2006-0636024)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6. 23. 접수번호 : 2AA-2006-0748338)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0. 06. 29. 접수번호 : 2AA-2006-0862689)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마약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07.06. 접수번호:2AA-2007-0140374)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지식재산권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07.06. 접수번호:2AA-2007-0176041)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07.09. 접수번호:2AA-2007-0245450)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체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 사유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형사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07.13. 접수번호:2AA-2007-0370507)

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08.02. 접수번호:2AA-2008-0030503)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0. 8. 6.까지 총 2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8.5.(1)	○ 여성 인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것 같다는 내용
2	2020.8.6.(1)	○ 형법을 개정하여 최고 형량과 최저 형량을 규정하고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나. 민원 우편

○ 접수 의견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20.6.24.	○ 사기,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2	2020.7.10.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민대상 설문조사 후 결과를 송부하며 양형기준에 반영해주시기를 원하는 내용
3	2020.7.14.	○ 마약, 절도, 사기,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4	2020.7.15.	○ 아동 성착취 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판결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6. 24.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사기,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7. 14.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마약, 절도, 사기, 횡령범죄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회신을 바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회의자료로 보고하고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성 명	조 상 철 (趙商喆)
	직 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사법연수원 수료(제23기) ○ 1994 공군법무관 ○ 199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9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 2000 일본 경응의숙대 장기연수 ○ 2001 법무부 검찰국 검사 ○ 2002 법무부 검찰1과 검사 ○ 200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 20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원 직대) ○ 2007 제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2008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 2009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 2010. 8.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2011. 9. 법무부 검찰과장 ○ 2012.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2013. 4. 법무부 대변인 ○ 2014. 1.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2015. 2.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 2016. 1.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 2017. 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018. 6.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9.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0. 1.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 2020. 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성 명	고 경 순 (高敬順)
	직 책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주 요 경 력		
○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 199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01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 200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20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8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0. 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1.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법무연수원 파견)	
○ 2013. 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13. 8.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국외연수	
○ 2014. 8.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201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장검사	
○ 2016. 1.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 2017. 8.	대전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	
○ 2018. 2.	대전지방검찰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 부장검사	
○ 2018.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	
○ 2019. 8.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 2020.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20. 8.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신임 전문위원 프로필

	성 명	최 성 국
	직 책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 2001. 부산지방법검찰청 검사 ○ 2003.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 2005. 울산지방법검찰청 검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 2010.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 ○ 2012. 사법연수원 교수 ○ 2015.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6.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7. 제주지방법검찰청 부장검사 ○ 2017.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 2018.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 2019. 부산지방법검찰청 인권감독관 ○ 2020.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별지4]

법원 및 죄명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현황

단위: 명, %

법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	전체
서울중앙	수	27	3	5	35
	비율	77.1	8.6	14.3	100.0
서울동부	수	18	1	4	23
	비율	78.3	4.3	17.4	100.0
서울남부	수	41	2	2	45
	비율	91.1	4.4	4.4	100.0
서울북부	수	35	1	2	38
	비율	92.1	2.6	5.3	100.0
서울서부	수	24	2	1	27
	비율	88.9	7.4	3.7	100.0
의정부	수	13	45	17	75
	비율	17.3	60.0	22.7	100.0
고양	수	12	9	3	24
	비율	50.0	37.5	12.5	100.0
인천	수	26	44	9	79
	비율	32.9	55.7	11.4	100.0
부천	수	12	14	2	28
	비율	42.9	50.0	7.1	100.0
수원	수	24	30	18	72
	비율	33.3	41.7	25.0	100.0
성남	수	13	5	6	24
	비율	54.2	20.8	25.0	100.0
여주	수	4	4	5	13
	비율	30.8	30.8	38.5	100.0
평택	수	2	22	2	26
	비율	7.7	84.6	7.7	100.0
안산	수	16	10	1	27
	비율	59.3	37.0	3.7	100.0
안양	수	14	3	7	24
	비율	58.3	12.5	29.2	100.0

단위: 명, %

법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	전체
춘천	수	9	3	4	16
	비율	56.3	18.8	25.0	100.0
강릉	수	3	3	1	7
	비율	42.9	42.9	14.3	100.0
원주	수	2	3	5	10
	비율	20.0	30.0	50.0	100.0
속초	수	5	3	1	9
	비율	55.6	33.3	11.1	100.0
영월	수	5	4	0	9
	비율	55.6	44.4	0.0	100.0
대전	수	22	7	3	32
	비율	68.8	21.9	9.4	100.0
홍성	수	4	12	4	20
	비율	20.0	60.0	20.0	100.0
공주	수	0	10	2	12
	비율	0.0	83.3	16.7	100.0
논산	수	2	5	2	9
	비율	22.2	55.6	22.2	100.0
서산	수	2	20	1	23
	비율	8.7	87.0	4.3	100.0
천안	수	5	5	10	20
	비율	25.0	25.0	50.0	100.0
청주	수	9	7	18	34
	비율	26.5	20.6	52.9	100.0
충주	수	2	13	5	20
	비율	10.0	65.0	25.0	100.0
대구	수	15	19	4	38
	비율	39.5	50.0	10.5	100.0
대구서부	수	9	11	5	25
	비율	36.0	44.0	20.0	100.0
경주	수	1	5	3	9
	비율	11.1	55.6	33.3	100.0
포항	수	3	3	7	13
	비율	23.1	23.1	53.8	100.0
김천	수	5	7	3	15

단위: 명, %

법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	전체
	비율	33.3	46.7	20.0	100.0
상주	수	6	10	3	19
	비율	31.6	52.6	15.8	100.0
부산	수	18	7	17	42
	비율	42.9	16.7	40.5	100.0
부산동부	수	8	1	0	9
	비율	88.9	11.1	0.0	100.0
부산서부	수	6	6	1	13
	비율	46.2	46.2	7.7	100.0
울산	수	19	20	43	82
	비율	23.2	24.4	52.4	100.0
창원	수	18	28	7	53
	비율	34.0	52.8	13.2	100.0
진주	수	6	2	2	10
	비율	60.0	20.0	20.0	100.0
밀양	수	2	9	0	11
	비율	18.2	81.8	0.0	100.0
거창	수	0	5	0	5
	비율	0.0	100.0	0.0	100.0
광주	수	14	9	11	34
	비율	41.2	26.5	32.4	100.0
목포	수	8	12	0	20
	비율	40.0	60.0	0.0	100.0
순천	수	11	11	3	25
	비율	44.0	44.0	12.0	100.0
해남	수	4	3	6	13
	비율	30.8	23.1	46.2	100.0
전주	수	8	2	5	15
	비율	53.3	13.3	33.3	100.0
군산	수	1	6	7	14
	비율	7.1	42.9	50.0	100.0
정읍	수	2	5	0	7
	비율	28.6	71.4	0.0	100.0
제주	수	14	21	8	43
	비율	32.6	48.8	18.6	100.0

단위: 명, %

법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	전체
전체	수	529	492	275	1,296
	비율	40.8	38.0	21.2	100.0